

총 무 처

임제 200- (72-8402) 1971. 4. 26

수신 과학기술처장관

제목 휴직자의 복직발령일자에 관한질의 "회신"

1. 총무 200-2547 (71. 3. 19) 에 대한 회신임.

2. 귀문의 경우

가. 발령기준일에 대하여

제대일자 또는 복직원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 소급발령은 불가하며, 군사원호대상자 임용법 제 1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복직원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체없이 발령조치하여야 함.

나. 복직원제출여부에 대하여

동법 제 12조제 1항의 규정에 의거 제대일로부터 30일 내에 제대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입재 200~

1971. 4. 26.

있는 재대증 또는 범죄증명서를 첨부하여 부직원을 제출하여야 함.

2. 휴직기간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직발령일자를 동법 제7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으로 보낼것이 타당하다고 시사됨.

3. 추가사항.

부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인사처리

에 대하여 사실 확인

소속기관의 장은 국방부 또는 당해 공무원의 현황병적지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휴직부직발령출처~~

재대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대 일로부하 30일 이하에 부직원을 제출하지 하여 할 수 있음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72조 제2호 및 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휴직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보고 임용권자는

동법 제 23 조 제 2 항 및 제 3 항의 취정에 의거 지체없이 복직
발령하여 이를 당해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사
료되며,

다. 불응자에 대한 조치

복직발령통지를 받고도 복직에 불응하거
나 또는 하등의 사유없이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법 제 56 조 내지 제 58 조 제 1 항에 규정된
복무의무를 다하지 못한차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임
응권자는 당해공무원을 징계처분 또는 동법 제 70 조
제 1 항 제 2 호를 준용하여 직권면직 처리함이 타당하
다고 사료됨. 끝

총 무 처 장 관

61